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목 차>

1. 농업기계 자금지원대상 제외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이름	홍수빈
	담당부서 (과)	첨단기자재종자과		직급	농업주사
	국장	이시혜		연락처	044-201-1897
	과장	최민지		이메일	hsb1212 @mail.go.kr

2026. 09. 30.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이시혜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업기계 자금지원대상 제외 기준														
	2.규제조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별표1의2														
	3.위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농업기계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구매자에게 동일 농업기계를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중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들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1837호, 2026.7.7. 개정, 202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 필요														
	7.규제내용	○ 농업기계 제조업자들의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 자금 지원 제외 기준 규정 － 이중가격 판매 시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이상 12개월 －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1회 3개월, 2회 12개월, 3회 이상 24개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이해관계자) 농업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농업기계 제 조업자 ·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td><td>약 4,000개소(‘25.12월 기준)</td></tr><tr><td>이해관계자</td><td>농업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등</td><td>254만명 (‘25년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수)</td></tr><tr><td>관련기관</td><td>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업기계 제 조업자 ·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약 4,000개소(‘25.12월 기준)	이해관계자	농업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등	254만명 (‘25년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수)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업기계 제 조업자 ·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약 4,000개소(‘25.12월 기준)														
이해관계자	농업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등	254만명 (‘25년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수)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9.규제목표	○ 농업기계 제조업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기계 가격 선택권 보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이중가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들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규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 (편익) 거래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와의 이중가격에														

		다른 사회적 갈등 감소에 대한 편익 발생, 공정한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편익) 이중가격 판매, 담합 등 농업기계 제조업자들의 부당행위를 최소화하여 정책자금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완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행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3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별표 1의2] <u><신 설></u> <u>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u> <u>기준(제1조의3제1항 관련)</u> 1. <u>일반기준</u> 가. <u>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u> <u>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u> <u>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u> <u>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u> <u>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u> <u>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u> <u>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u> <u>기준으로 한다.</u> 나. <u>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u> <u>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u> <u>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u> <u>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u> <u>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u> <u>음 차수로 한다.</u> 다. <u>법 제4조제2항에 대해 행정처분</u> <u>적용시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해서만</u> <u>적용한다.</u> 라. <u>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u> <u>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u> 1) <u>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u> <u>경우</u> 2) <u>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u> <u>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u>

현행	개정안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내용</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행정처분 기준</th></tr><tr><th>1회 위반</th><th>2회 위반</th><th>3회 이상 위반</th></tr><tr><td>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td><td>법 제4조의2 제1항</td><td>3개월</td><td>6개월</td><td>12개월</td></tr><tr><td>「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받은 경우</td><td>법 제4조의2 제1항</td><td>3개월</td><td>12개월</td><td>24개월</td></tr></table>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	법 제4조의2 제1항	3개월	6개월	12개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받은 경우	법 제4조의2 제1항	3개월	12개월	24개월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	법 제4조의2 제1항	3개월	6개월	12개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받은 경우	법 제4조의2 제1항	3개월	12개월	24개월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농업기계 구입 시 정책자금 지원되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구매자보다 동일 농업기계를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한다는 현장 민원이 제기됨
- 농업기계 판매 시 이중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법률 제21837호, '26.7.7. 개정, '2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정부의 정책자금 및 보조사업 등을 지원받으면서 이중가격 판매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부 지원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날 수 있음
- 위반 횟수에 따라 지원 제외기간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경미한 위반과 상습적 위반을 구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등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음
-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부개입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 위반 유형별 지원 제외 기간 차등 적용
	내용	○ 위반 유형별 지원 제외 기간 차등 적용 - (이중가격 판매 시)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12개월 - (공정거래법 위반 시) 1회 3개월, 2회 12개월, 3회 24개월
규제대안2	대안명	○ 위반 유형 구분 없이 동일한 지원 제외 기간 적용
	내용	○ 위반 유형 구분 없이 모든 부당행위에 동일한 지원 제외기간 적용 - 1회 3개월, 2회 12개월, 3회 24개월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위반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재 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다수 사업자의 공동행위로 시장 경쟁질서와 가격형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보다 긴 제외기간을 설정하였으며, ○ 이중가격 위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제외 기간을 적용하여 농업인이 장기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완화	○ 위반 행위의 유형별로 지원 제외 기간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제재수준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규제대안2	○ 위반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제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피규제자에 대한 제도의 형평성 확보	○ 시장 파급 효과를 고려했을 때 동일한 제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며, 위반 업체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업인 구입 부담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지자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 ('26.9.17~9.27)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공문 시행)	이견없음	해당없음
농업인 단체	○ ('26.7.30) 농업기계 제도개선을 위한 농업인단체 간담회	이중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이 필요하며, 제재로 인한 부작용(농기계 구입 애로 등)이 없도록 관리 요청	위반 유형에 따라 지원 제외기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농업기계 업체	○ ('26.9.28~10.6)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업기계 업체 의견조회(메일)	개별 영업여건 및 거래조건에 따라 최종 판매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산 및 거래 시점, 거래물량, 판촉·할인 조건 등 판매거래의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 화할 필요가 있음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행 안으로도 부당행위 여부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나, 향후 입법예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개정안 반영 여부 결정 예정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대안명 : [규제대안 1] 위반 유형별 지원 제외 기간 차등 적용
- 근거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인상하는 행위로 시장 경쟁질서와 가격형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가격 판매와 동일한 제재기간을 적용하기보다 반복 위반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이중가격 위반에 대해서까지 공정거래법 위반과 동일한 지원 제외기간을 적용할 경우, 해당 업체가 판매하는 농업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구입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져 농업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 [규제대안 2]는 위반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 제외기간을 적용하므로 [규제대안 1]에 비해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차등적 제재가 어려움
 -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하면서 농업인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유형별 기준을 이원화하는 [규제대안 1]로 선택하였음

3. 규제목표

- 이중가격 판매, 담합 등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의 부당행위를 최소화하여 정책자금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완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공정한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의 목적은 농업기계 정책자금과 연계된 이중가격 판매, 담합 등 부당행위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음
- 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기준은 파급 효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위반 유형별로 차등 규정하였음
 - (이중가격 판매)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이상 12개월
 - (공정거래법 위반) 1회 3개월, 2회 12개월, 3회 이상 24개월
- 이중가격 판매, 담합 등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의 부당행위를 최소화하여 정책자금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완화라는 규제 목적에 비해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며,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 제외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 활동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판매/영업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 모델
판단 근거	규제대상집단(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규모별 매출액 등 관련 통계자료 미비
④ 대상 업종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
⑤ 예비분석내용	본 규제는 농업기계 정책자금과 연계된 이중가격 판매, 담합 등 부당행위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 부당행위에 따른 정책 자금 지원 제외라는 정책목적은 모든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에게 동일하게 요구될 필요가 있으며, 특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예외 인정 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본 규제내용과 유사한 해외사례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고, 반복 위반 여부와 위반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참여제한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5년간 동일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2분의 1 범위의 감경기준을 두는 이번 개정안과 규제설계 방식이 유사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6>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8. 18.>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정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정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정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정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의2)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	법 제32조제1항제3호	3년 이내 3년 5년 2년

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5년 2년 2년 2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2년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농업기계 자금지원대상 제외 기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농업기계 자금지원대상 제외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이중가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들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규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 (편익) 거래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와의 이중가격에 따른 사회적 갈등 감소에 대한 편익 발생, 공정한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편익) 이중가격 판매, 담합 등 농업기계 제조업자들의 부당행위를 최소화 하여 정책자금이 농업기계 구입 부담 완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에 대해 자금 지원 제외 결정 전 사전통지와 20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는 등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 보장이 되어있으므로 피규제자가 충분히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중가격 판매는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농업기계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 사안으로, 규제 준수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 보조사업 등 기존 정책자금 관리 체계와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규제 집행기관의 추가 행정 부담은 크지 않으며, 충분히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을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별도 예산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추진 경과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26.7.7.)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6.9.16.)
- 지자체, 관계기관 등 사전 의견조회('26.9.17~9.27): 별도 이견 없음

○ 향후 평가계획

- 입법 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 수렴('26.10.)
- 지자체 업무 담당자 등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26.12.)

2.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기준 등	제도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제도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 위반유형·횟수별 지원 제외 기간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 위반 유형별 지원 제외 기간 차등 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이중가격 등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들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규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 (편익) 거래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와의 이중가격에 따른 사회적 갈등 감소에 대한 편익 발생, 공정한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편익) 이중가격 판매, 담합 등 농업기계 제조업자들의 부당행위를 최소화 하여 정책자금이 농업기계 구입 부담 완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위반 유형별 지원 제외 기간 차등 적용>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농업기계 제조업자 ·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활동제목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등 자금 지원 대상 제외
편익항목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사회적 갈등 감소에 대한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거래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와의 이중가격에 따른 사회적 갈등 감소에 대한 편익 발생 및 공정한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농업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국민
활동제목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등 자금 지원 대상 제외
편익항목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 및 농기계 시장 유통 질서 확립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농업기계 판매 시 부당행위를 한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 및 농기계 시장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